조선봉건왕조시기 《10악》에 포함된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죄와 형사책임의 반동성

천 세 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계급적으로 대립됨에 따라 도덕도 계급적성격을 띠고 서로 대립되게 되였습니다. 착취사회에서는 계급적리해관계를 떠난 그 어떤 보편적인 도덕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관 제12권 84폐지)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로서의 륜리도덕은 일정한 사회력사적, 계급적관계속에서 형성되며 일정한 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저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유교성리학에 기초한 륜리도 덕을 체계화하고 그에 따르는 복잡한 《례의》질서의 실현을 강요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와 국가사회적으로 또는 가족친척내에서 지켜야 할 질서 그리고 혼례, 상례, 제례와 관련한 복잡한 생활질서를 규정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봉건형사법에서 가장 엄중시한 《10악》에 속하는 강상죄(삼강과 오상의 도덕을 심하게 위반한 죄)로 규정하였으며 그 범행자들에게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무거운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10악》에 포함된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죄와 형사책임의 반동 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높은 신분계층에 대한 낮은 신분계층의 무저항을 강요하기 위 한것이였다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우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늪이 있는것은 정연한 리치이며 군자는 이것에 준하여 우와 아래를 구별한다.》,《낮고 높은것이 갈라지니 귀하고 천한것이 정해진다.》라는 《주역》의 명제를 빌어 봉건지주계급의 계급신분적 및 관료적특권을 합리화하면서 인민들이 저들에게 순종할것을 《례의》로 강요하였다. 그들은 《귀한자가 천한자를 다스리고 천한자가 귀한자를 받들어섬기는것은 당연한 하늘의 리치》이며 이것이 《정사하는 기본방도》로 되기때문에 그 침해로 되는 행위들을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봉건적상하례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강상죄로 몰아 무자비하게 징벌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우선 노비로서 상전을 욕설하거나 그의 비행을 고발하는 행위를 《10악》의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를 범한 노비에게 중형을 들씌우도록 함으로써 량반지주에 대한 노비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였다.

조선봉건왕조에 와서도 량반지주계급은 저들이 장악하고있는 특권을 리용하여 많은 토지와 함께 노비를 소유하고 그들을 악착하게 부려먹었다.

조선봉건왕조는 그 성립초기부터 중요한 착취대상인 노비대렬을 늘이려는 봉건지주계급의 리익을 반영하여 《노비추쇄도감》,《쇄권색》,《노비변정도감》등과 같은 관청들을 설치하고 《노비결송법》,《도주노비진고법》,《속공노비진고법》을 제정하여 공노비를 찾아내며사노비의 소속을 밝히는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형벌에 의한 노비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모중 한편이 노비이면 그 아들딸들이 다 노비로 되는 《종모종부지법》도 제정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노비대렬이 늘어나고 그것이 봉건지주계급의 리익에 맞게 재편성되였으며 노비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더욱 강화되였다.

노비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강화는 그를 반대하는 노비들의 투쟁의식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 노비들은 도망, 등록회피 등 여러가지 소극적인 반항과 함께 신공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자주성을 위한 노비들의 투쟁을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봉건유교교리에 의한《례의질서》에 철저히 얽어놓는 한편 그 위반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또한 고공(고공은 신분적으로는 량인이면서도 남의 밑에 가서 고역을 치르던 봉건시대의 비천한 계층을 가리키는 말임 즉 후세의 머슴)으로서 가장을 때리거나 욕설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10악》의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를 범한 고공에게 중형을 들씌우도록 함으로써 량반지주에 대한 고공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였다.

고공은 량인으로서 낮은 품삯을 받고 노비와 같이 자기 주인이 요구하는 무제한한 로동을 하여야만 하였다. 이 시기 고공의 처지는 고려시기보다 더 비참하였을뿐아니라 법적으로도 노비와 류사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5년이상의 장기계약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물론 1-2년의 단기간이라도 고공으로 고용주의 호적에 등록만 되면 고용주에 의하여 노비처럼 팔리거나 증여의 대상으로 되지 않을뿐 노비와 거의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고공으로서 주인의 요구에 항거하여 그를 때리거나 욕하며 주인의 범죄를 고발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였다. 이때의 형사책임은 노비의 경우와 다를바 없었다.

고공살이에서 풀려나온 후 옛 주인에 대하여 항거한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경국대전》의 《형전》에는 고공살이를 한 사람으로서 옛 주인을 때리거나 욕하며 주인의 범죄를 고발한 행위를 봉건륜리도덕을 침해한 특별히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행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들씌우도록 되여있다. 이것은 봉건지주계급의 신변과 《권위》를 봉건적례의의 간판밑에 보호하며 그들의 비행이 폭로되는 경우 봉건지배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의식이 높아지는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또한 백성으로서 감사나 고을원을 모욕하거나 그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행위를 《10악》의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를 범한 백성에게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들씌우도록 함으로써 량반지주에 대한 백성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통치체계에서 차지하는 감사, 원들의 지위를 중시하여 그들에 대한 절 대복종체계를 세우고 거기에 봉건적례의의 외피를 씌워 그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10악》 의 《불의죄》에 걸어 엄격히 징벌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형률에 의하면 백성들중에서 감사나 고을원을 모욕하여 《륜리를 파괴한》사람은 고을에서 쫓아버리고 그 집터를 못으로 만들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84 21년 2월 경오,《로산군일기》권11 단종2년 6월 기해) 한편 관하 백성으로서 직접 자기 고을원의 비행을 고소한 사람은 장형 100대, 류형 3 000리에 처하고 몰래 다른 사람을 부추겨 고소한자는 장형 100대, 도형 3년에 처하며(《세종실록》권51 13년 3월 기축) 그러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련속 일어났을 경우에는 고을의 등급을 떨구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 47 12년 3월 병인)

조선봉건왕조는 계층적인 관료질서를 재편성하고 품계 및 관직등급들사이의 복잡한 봉 건유교적례의질서를 세웠으며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범죄시하였다.《경국대전》의《형전》 에 의하면 직무상 하급이 직무상 상급을 욕설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장형 100대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부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형죄에 대하여 관리들은 속죄하게 되여있었으므로 그런 범죄를 범한 관리가 결코 형벌을 받는것은 아니였다.

결국 이것은 약간의 속죄금과 같은 벌금으로 상하례의질서를 침해하는 관리들의 행위를 위협하는 한편 인민들에게 봉건적인 례의질서를 지키지 않는 관리들도 처벌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그들을 저들에게 더욱 순종시키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10악》에 포함된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죄와 형사책임의 반동 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웃사람에 대한 아래사람의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기 위한것이였다 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봉건적륜리도덕에 기초하여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부리고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섬기는것은 하늘의 리치이며 백성의 도덕》이기때문에 《아래사람으로 서 웃사람을 업신여기며 어린것이 어른을 업신여기는것은 설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두 둔해주지 말고 죄를 주어야 한다.》(《세종실록》 권40 7년 5월 정축)라고 설교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웃사람과 아래사람사이의 복잡한 봉건적례의질서를 세우고 그 위반자들을 《10악》의 강상죄에 걸어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였다.

웃사람과 아래사람사이의 봉건적례의질서를 어긴 범죄와 형사책임의 규제에서 주목되는것은 가족친족내에서의 상하례의질서를 어긴 행위를 특별히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히 징벌하도록 한것이다.

《경국대전》의 《형전》에 부모나 남편에 대한 고발행위를 엄중한 범죄로 특별히 규정한 것은 《3강5륜》에 기초한 부모나 남편에 대한 자식이나 처의 절대적복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것은 결국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여 봉건지배계급의 요구에 피지배계급인민들을 순종시키기 위한것이였다.

《경국대전》의《형전》에 부모나 남편에 대한 고발행위를 엄중한 범죄로 특별히 규제 한것은 봉건지주들속에서 토지와 노비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첨예하였던 조 건에서 그들속에 봉건륜리도덕을 장려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장려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 초기에 토지와 노비에 대한 소유권을 재인정하는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례없이 큰 규모에서 진행되고있던 조건에서 지배계급의 가족들에서는 그 소유권을 둘러싸고 송사질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아들이나 손자, 안해나 첩으로서 부모나 가장의 비행을 고발하는것을 법전에 특별히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러한 행위자들을 극형으로 징벌하도록 하였던것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10악》에 포함된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죄와 형사책임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혼례질서를 강요하기 위한것이였다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결론 및 리혼, 재혼질서의 준수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이 혼례를 어겼을 경우에는 《10악》의 강상죄에 걸어 형사책임을 들씌우도록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우선 봉건유교교리에 의한 결혼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10 악》의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를 범한 사람에게 무거 운 형벌을 들씌우도록 함으로써 봉건지주계급의 대표자인 왕에 대한 《충성》을 강박하고 신 분적귀천을 명백히 하여 피지배계급에 대한 봉건지주계급의 지배를 강화하며 그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하여 복잡한 결혼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봉건유교적결혼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와 형사책임에 대한 규제에서 주목되는것은 첫째로, 부모의 거상중에 결혼하는 행위를 특별히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행자에게 중형을 들씌우도록 한것이다.(《대명률직해》의 《명례률》, 《형률》)

이것은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부모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장려하기 위한것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부모에 대한 《3강5륜》에 기초한 《충효》를 강요함으로써 나아가서 그 것을 왕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하였다.

봉건유교적결혼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와 형사책임에 대한 규제에서 주목되는것은 둘째 로, 량인과 천인사이의 결혼을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행자들을 처벌하게 한것이다.

조선봉건왕조는 그에 앞선 봉건국가들에서와 같이 확립된 계급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신분들끼리 결혼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원칙상 량반과 량인, 량반과 노비가 결혼할수 없는것은 물론 량인과 노비도 결혼할수 없었다. 이것을 어기면 범죄시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여있었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또한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리혼 및 재혼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10악》의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무거운 형벌을 들씌우도록 함으로써 녀성들에게 철저한 무권리와 예속을 강박하려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법에 의하면 리혼은 법이 정한 일정한 조건밑에서 남편 또는 시가켠에서만 할수 있었다. 처가 말이 많거나 훔치는 버릇이 있을 때, 질투하는 버릇이 있을 때, 부화한 경우와 시부모에게 불손할 때, 아들을 낳지 못하였거나 나쁜 병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리혼할수 있었다.

재혼은 남자에 있어서는 안해가 죽었을 때에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아무 런 제한도 없었으나 녀자의 경우에는 한번의 재가만 허용되였다.

이와 같은 리혼 및 재혼질서를 어기면 범죄로 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하였다. 특히 남편을 배반하고 《재가》한 부녀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대명률직해》의 《호률》) 남편이죽은 다음 2번이상 《재가》한 부녀의 경우에는 형조에서 등록하고 리조, 병조, 사헌부, 사간원 등에 통보하여 그 자손의 과거응시를 금지하며 벼슬을 주는데서도 제한하도록 하였다.(《경국대전》의 《례전》)

조선봉건왕조시기 《10악》에 포함된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죄와 형사책임의 반동 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상례, 제례질서를 강요하기 위한것이였다는 데 있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우선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상례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를 범한 주민에게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다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상례질서를 유지강화하고 그를 통하여 봉건 지주계급의 《위엄》을 높여 착취자, 억압자로서의 저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므로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상례규범들을 량인이나 노비에게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만 상하관계를 엄격히 지키게 하는 한도내에서만 적용하였다. 부모나 조부모가 죽어서 상복을 입는 기간 량반신분은 일체 국가 및 사회생활에서 리탈하여 오직 《효도》을 다함으로써 그 위엄을 높이려 하였지만 량인이나 노비는 물론 아전에 이르기까지도 이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아전은 부모의 상사라도 100일간밖에는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다시 자기 직무에 복무하게 하였으며 량인이나 노비의 경우에는 문제로 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량인이나 노비가 상사중이라고 하여 3년동안 농사도 안짓는다면 생산이 파괴되고 량반지주들의 수탈원천도 그만큼 줄어들기때문이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또한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제례질서를 강요함으로써 왕과 봉건지주계급에 대한 《효도》를 내려먹이고 봉건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전제정치를 철저히 실현하려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큰 제사, 중간급의 제사, 작은 제사에 속하는 많은 제사종류와 제사날자, 제사지내는 절차 등 잡다한 규정을 정하여놓고 그 준수를 강요하였다.(《세종실록》 5 례의 1)

물론 제사를 지내는데서도 계급신분적지위에 따라 차별이 규정되였다. 《경국대전》례전에 의하면 6품이상의 문관이나 무관은 3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7품이하는 2대까지 제사를 지내며 일반사람은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게 되였다. 제례질서의 강요는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효도》를 장려함으로써 봉건국가의 전제정치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때문에 제례에 배치되는 일체행위는 다 형사징벌의 대상으로 규제하였다.

우리는 착취사회의 국가와 법의 반동성을 똑바로 알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